

동두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99. 9.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 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함 (안 제2조)

나. 청소년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을 정함 (안 제3조)

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절차를 정함 (안 제4조)

라.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정함 (안 제5조)

마.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방법을 정함 (안 제6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지정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자와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정 절차) ①제2조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해당구역 주요출입구 및 구역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이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